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0. 4. 22.  
경제도시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배지훈 의원 등 6명(김인호, 박종길, 김태형, 김기열, 이성순)
- 발의일자: 2020. 3. 23.
- 회부일자: 2020. 4. 9.
- 상정 및 의결: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(2020. 4. 22.)

### 2. 개정이유

- 달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안전도시 조성 중점 지원사업 구분 신설(안 제6조 제2항)
- 방연마스크 비치사업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(안 제6조 제3항)

## **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**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0. 3. 23. ~ 2020. 4. 3.) 결과: 의견 없음

## **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**(전문위원 김휘용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## **6. 질의 및 답변요지:** 특이사항 없음

## **7. 토론요지:** 특이사항 없음

## **8. 심사결과:** 원안가결